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3. 제안이유

-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전 공표대상 정보를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정보공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을 통해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 기회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위임근거 명확화 (안 제1조)
  - 목적규정에서 조례의 제정 근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외에도 같은 법 시행령을 추가
-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절차 등 개선 (안 제5조제3항)
  - 사전 공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

○ 정보공개심의회 명칭 및 구성 관련 규정 정비 (안 제9조 및 제10조제3항제2호 단서)

- 심의회 명칭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로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맞지 않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 관련 조항 삭제

○ 수당 등에 대한 지급 근거 명확화 (안 제14조)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해서도 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

○ 정보공개 수수료 조정 (안 별표)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감액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1GB마다 800원’

## 5. 검토의견

### ○ 안 제1조(조례의 위임근거 명확화)

- 상위법률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어 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추가하여 조례 위임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 조치라 판단 됨.

### ○ 안 제5조제3항(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절차 등 개선)

-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은 공표정보의 게재 및 주요 공표목록과 공표주기, 시기, 방법을 「충청북도 정보공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내용을 정하는 주체가 없어 심의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보여짐.
-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은 사전 공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됨.

### ○ 안 제9조 및 제10조제3항제2호 단서(정보공개심의회 명칭 및 구성 관련 규정 정비)

- 기존 조례 제9조의 “정보공개심의회” 명칭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 로 명확히 하는 것은 조례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타당한 조치임.
-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과 구성비율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한다고 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배치됨에 따라 30%이상 여성 비율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특정 성별의 구성비율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되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됨.

- 안 제12조제3호 신설(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은 사전 공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의 범위를 규정한 제12조제3호에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 조치는 타당함.
-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수당 등에 대한 지급 근거 명확화)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해서도 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심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적 조치로 판단 됨.
- 정보공개수수료 별표(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감액)
  -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한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 시·도의 조례 운영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가 시행규칙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변경은 필요적 조치로 판단 됨.

붙임: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